

■ 구비서류 안내[제반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8.21.) 이후 발급분에 한함]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서약서	본인	• 견본주택에 비치
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	• 견본주택에 비치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(소득 및 자산 조회용)	본인 및 세대원	•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 비치(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서명 후 제출) •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직접 서명(정자이름날인)하고,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함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) ※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,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• 본인 발급용에 한함 •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(용도: 서류접수 및 계약 / 제출처: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) 기재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/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가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	•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전부공개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(“일반” 또는 “특정” 발급 시 불인정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※ 혼인하지 않은 미혼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을 위하여 제출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(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를 포함) 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(“일반” 또는 “특정” 발급 시 불인정)
	출입국사실증명		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(1961.01.01. 이전 출생의 경우 1961.01.01.로 지정)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[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 표시, 개명한 경우 개명 전·후 기록(기록대조일 동일) 모두 제출]
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피부양 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제출 ※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※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하여발급(모집공고일기준 과거 3년 이상 내역)·열람이 아닌 발급요구서로 신청 후 발급(용도: 주택공급신청용)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(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[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]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(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)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전부공개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(“일반” 또는 “특정” 발급 시 불인정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(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)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(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를 포함)하여 “상세”로 발급(“일반” 또는 “특정” 발급 시 불인정)
	출입국사실증명		•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※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※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
추가서류 (해당자)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
	단신부임 입증서류		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: 파견 및 출장 명령서(직인날인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•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발급내역 등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: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(①, ② 모두 반드시 제출)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
■ 구비서류 안내[제반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8.21.) 이후 발급분에 한함]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추가서류 (해당자)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태아(임신진단서) 또는 출생신고 전인 자녀(출생신고서)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• [출산가구 소득·자산기준 완화 관련]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2023.03.28.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• [출산특례 관련]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2024.06.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※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, 담당의사명·면허번호·의료기관등록번호·출산예정일·의료가관 연락처·해당 의료가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• 견본주택에 비치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 • [출산가구 소득·자산기준 완화 관련] 2023.03.28.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[출산특례 관련] 2024.06.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입양확인각서		• 견본주택에 비치
	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		• [출산특례 관련] (양육사실 증빙)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
	통장사본		• [출산특례 관련] (양육사실 증빙)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 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
	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		• [출산특례 관련] (양육사실 증빙)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 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※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(계좌번호, 생년월일, 발급일자, 발급번호, 입급자명 등) 포함(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) ※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상기 등본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“전체포함”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(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)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전부공개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(“일반” 또는 “특정” 발급 시 불인정)
	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		•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
추가서류 (해당자)	장애인 등록증	직계존속	•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자촉에 가입한 자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•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전부공개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(“일반” 또는 “특정” 발급 시 불인정)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’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(상기 초본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“전체포함”하여 발급)
	출입국사실증명	세대원	• 단신부임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,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 체류 여부 확인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(1961.01.01. 이전 출생의 경우 1961.01.01.로 지정)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[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 표시, 개명한 경우 개명 전·후 기록(기록대조일 동일) 모두 제출]
부적격 통보받은 해당자	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		•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
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자	• ‘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’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※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접수 시 추가사항 (배우자포함)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당첨자 본인	• 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_당첨자 기준
	위임장		• 견본주택 비치, 청약 신청자 인감도장 날인
제3자 대리인 접수 시 추가사항 (배우자포함)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